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재나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자 2023재나7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자 2022재나2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212251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5. 28.

판결선고 2024. 6.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21225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0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5,766,302원 및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는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1. 12.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807호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44932호로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30.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 및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6015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42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5. 11.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환송 후 항소심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어 1985. 6. 30.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도 취득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이 믿고 서울 관악구 B 대 3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C, D동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피고가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C, D동 건물을 매수할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된다고 믿고 위 각 건물을 매수한 것이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위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아.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8번에 걸쳐 대부분 같거나 비슷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5재나370, 2016재나49, 2016재나346, 2018재나67, 2019재나33, 2019재나194, 2020재나145, 2022재나26),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23. 5.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9번째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등기관외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의 결정에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므로’라고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가 위 각 건물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 2)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미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8번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가 이미 8차례의 재심의 소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통해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도 반복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성지호, 판사 김현미